

#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2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9. 2) 상정
-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9. 2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윤 인 상)

### □ 제안이유

-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지자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, 소요예산도 증가추세이나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 부조리 요인이 상존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「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」이 권고됨에 따라, 보조사업자의 “보조금 세부 집행 기준”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며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함(안 제9조의2 신설)

나.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정산하도록 함(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다. 보조사업자가 지도·감독, 감사 및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 보조금의 삭감,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은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7조제2항 신설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속기록 참고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특이사항 없음	○ 특이사항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○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#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)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.

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
2.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

③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보조사업 지원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른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

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.

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지도·감독, 감사 및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적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 보조금의 삭감,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은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